

‘25년 복권판매인 건전화교육

CONTENTS

- 1 복권판매인 건전화 교육**
- 2 복권판매점 이전 규정 및 절차**
- 3 온라인복권 판매점 주요 계약 내용**
- 4 판매점 위반 행위 주요 사례 및 규정 안내**

복권판매인 건전화 교육

1 사행산업의 현황과 이해

■ 국내 사행산업과 복권의 정의

▷ 사행산업 관련 정의

구분	정의
사행산업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쟁,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함)
사행행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사행성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성질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과 통제전략」)
사행성 게임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소싸움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상 '사행행위 영업'의 구분과 정의

업종	정의
복권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복권 판매인 도박중독 인식 교육

■ 도박의 개념과 정의

▷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박은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도박행동(gambling behavior), 도박행위(gambling action) 또는 도박활동(gambling activity)의 개념으로 혼용 되어 왔으며, 도박행동은 도박기간, 도박동기, 도박유형 등에 따른 행동양상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도박행동을 중심으로 도박을 개념화 하였습니다. 또한 도박행위는 인지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박의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활동은 기술 게임과 같이 특정 도박활동을 의미 합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이 밖에도 법률에서는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 상습도박죄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도박을 ‘우연성이 포함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것’(대법원 2010도9330)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는 도박을 영업자 기준으로 ‘사행행위’로 명명하며,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박의 종류

도구/게임	종류
경기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베팅, 투전, 투계, 소싸움 등
기구/기계	불법하우스도박, 바다이야기, 카지노, 스크린경마
재물자체	주식, 투기
숫자	복권
인터넷에 제공되는 게임	불법인터넷 도박, 사행성 PC방, 오락형 온라인 게임

▷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도박 행위의 조절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3 복권과몰입 예방

■ 복권의 양면성

▷ 도박이란?

복권의 수익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요행'에 대해 건전하게 해소하는 대체 수단으로 이용되고, 일주일의 행복감과 기대 등의 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있지만, 과도한 몰입 등으로 인한 중독, 인생역전 및 한방과 같은 사행심 등을 부추기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복권판매인이 실천 할 수 있는 복권과몰입 예방법과 책임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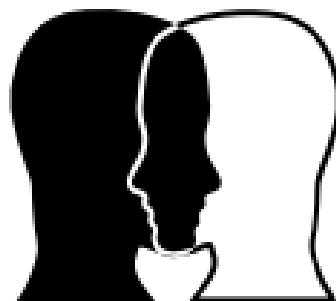
순기능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자금 조성

소액으로 즐기는 소소하고
건전한 오락·레저로서의 즐거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요행'에
대한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의 기쁨,
낙첨된 사람들은 사행심 자각
및 기부의 행위로 활기찬 마음
으로 생활에 복귀 하게 하는 기능



역기능

사행심 조장, 과도한 구매 등으로 인한 중독성
(과몰입) 등으로 인한 건전한 근로의욕 저하

복권 중독성이 심한 타 사행
산업 및 불법사행으로의 이동

인생역전, 한방과 같은 허황된
기대로 인한 허탈감 및 무기력

당첨번호 분석 등으로 당첨될 수 있다는
복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복권 과몰입의 이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복권 구매란 한 주간의 즐거운 희망을 심어주는 가벼운 오락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즐겁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복권에 과도하게 몰입한 이들은 의도한 것 보다 더 자주 복권을 구매하거나, 더 많은 돈을 써 버려서 생활비를 지불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과도한 부채 발생, 결혼생활 파탄, 비정상적 직장생활, 불법적 행동 등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복권 구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여, 생활 전체에 현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과몰입" 이라 부르며, 이는 하루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한 주변의 관심과 본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치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사행산업종사자로서의 책임게임

■ 책임게임이란?

복권 등 사행사업자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건전화 제도나 행위

■ 책임게임의 목적

건전문화 확산에 의한 판매점 매출 증대

- 소액구매고객 증가로 인한 판매점 매출 증대
- 여가 및 레저로서의 이용자 인식 전환을 통한 구매증 확대



책임게임을 통한 과몰입 예방 및 관리

- 불법 사행 도박 이용자 흡수 및 상담과 치유 활동을 통한 건전한 구매활동 회복
- 복권 건전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권산업에 대한 신뢰 강화

책임게임을 통한 이용자 인식 전환

- 사행심 유발 이미지에서 사회적 활력 & 희망의 이미지로 변화
- 여가 및 레저 문화 개념 구축과 몰입 예방 및 치유 효과
- 작은 금액으로 나눔과 기부활동에 참여한다는 인식 부여, 당첨이 안되어도 나눔에 대한 가슴 따뜻한 경험 제공

여가 및 레저로서의 건전 문화 정착

- 베팅 중심의 한방 문화에서 일주일의 희망을 가져다 주는 여가 및 레저 문화로 재정립
-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의 부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 사행산업 주체별 책임게임 실천 전략

각 사행산업의 궁극적인 책임은 '이용자 보호'에 있으며, 판매인은 이러한 '이용자 보호'의 실천과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자이며, 나의 복권 판매가 한 사람의 사행산업 이용 습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행 사업체 (복권)	본사 및 임직원	과도한 사행심을 유도하는 상품을 개발 하지 않을 책임 부적절한 집단(미성년자, 노인,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보호해야 할 책임 건전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
	판매인	복권법 및 판매인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건전한 판매환경 관리 (사행심 조장 홍보물 기기 금지) 도박중독 및 불법사행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 판매인 건전화 교육(온·오프라인) 필수 참석 의무
정부	사행산업의 건전화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사행산업 관리 감독 및 불법사행산업 단속	
이용자	자신이 이용하는 사행사업의 성질과 위험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할 책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행산업을 이용해야 할 책임	

복권판매점 이전 규정 및 절차

1 판매점 개설 및 거리제한 기준

동행복권 판매점간 거리 제한 규정(상권유형, 도시유형, 도로유형) 적용
[측정기준] 신규 개설 또는 판매점 이전 시 보행자의 통행로 기준 판매점간 거리 측정
[적용기준] 상권, 도시, 도로 유형 중 최단 거리 적용

■ 상권유형

상권유형	밀집도	설명	거리(m)
주거지역	고밀도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	100
	중밀도	저층 아파트 또는 소규모 고층 아파트 지역	200
	저밀도	단독 주택 지역	200
상업지역	고밀도	대규모 상권 지역 (동일블록 또는 반경 300m 내 70개 초과 자영업)	50
	중밀도	중규모 상권 지역 (동일블록 또는 반경 300m 내 30~70개 자영업)	100
	저밀도	소규모 상권 지역 (동일블록 또는 반경 300m 내 30개 미만 자영업)	200
업무지역	고밀도	대규모 오피스 지역 (대기업, 공장 밀집, 벤처 타운 등 다수의 기업 문집)	100
	중밀도	중규모 업무 지역 (고밀도는 아니나 다수의 사무실, 소수의 공장 지역)	100
	저밀도	소규모 상권 지역	200

■ 도시유형

도시유형	밀집도	거리(m)
특정시	특, 광역시	100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100
중도시	인구 20만~50만	200
소도시	인구 20만 미만	300

■ 도로유형

구분	도로유형	설명	거리(m)
1	대로	폭 25미터 이상(왕복 6차선 이상)	50
2	중로	폭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왕복3차선 이상 6차선 미만)	100
3	소로	폭 12미터 미만(왕복 3차선 미만)	200

3

판매점 이전 절차

판매점 개설 및 이전 시 동행복권의 거리제한 규정에 의거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판매점 이전 절차

▷ 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 평가(측정 유형별 종합 평가)

기존판매점과의 거리 측정

입지 상권 분석

판매점 유형 및 규모 측정

종합평가 (상권, 도시, 도로 유형별 최단거리 적용)

※ 평가 시 기존 판매점의 매출 영향 뿐 아니라 이전 대상 판매점의 예상판매금액을 고려

▷ 평가 시 주요 고려 사항

현재 유통점 운영 중인 사례

- 1) 동일 건물내 각각 유통점을 운영 중인 경우
- 2) 타 건물이나 거리제한 이내 유통점을 운영 중인 경우

현재 유통점 미운영 사례

- 1) 유통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신규판매인 중 판매점 개설 승인을 받는 경우
- 2) 또다른 신규판매인이 위 1)의 거리제한 내 개설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유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시 설치
(쌍방간 협의 진행)

선승인을 받은 판매점과 거리제한 적용

※ 신규판매점 간의 특수한 경우는 협의하여 해결하나, 기존 판매점간 거리제한은 적용

▷ 판매점 이전 시 주요 유의 사항

이전 설치 시 160,000원(부가세 별도)의 이전 설치비용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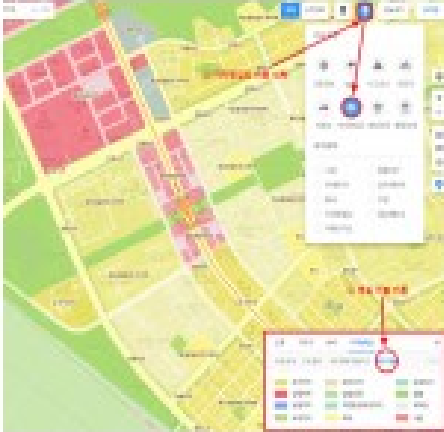
이전 시 이전판매점 승인 진행과정에서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제한을 적용합니다.

복권법 위반으로 해지된 장소(종업원 및 주소지)는 판매점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심화심사**: 필요한 경우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권 유형 거리 규정 간단 확인 TIP

- ① 판매점 개설 예정 장소의 상권 유형 확인: 주거지역/상업지역/업무지역
 - ▷ 인터넷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지도의 지적편집도 기능을 통해 상권 유형 확인 가능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 ② 판매점 개설 예정 장소의 인근 복권 판매점 위치 확인
 - ▷ 인터넷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지도의 복권 판매점 검색 및 매니저를 통해 확인 가능
- ③ 판매점 이전 예정 장소와 인근 복권 판매점의 “도보 기준” 거리 확인
 - ▷ 보행자의 동행로 기준
 - ▷ 상권유형/도시유형/도로유형 중 최단 거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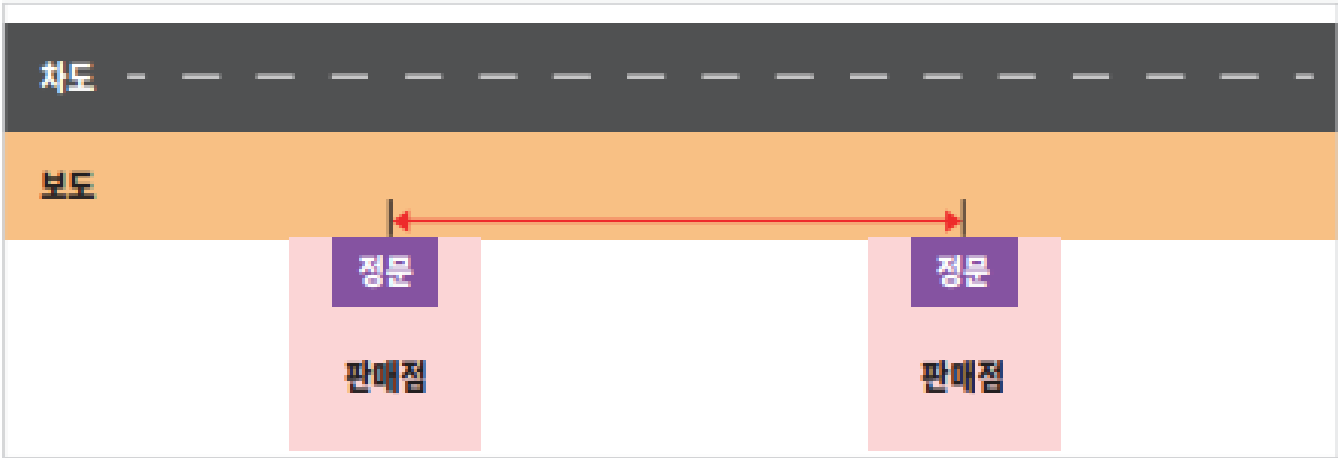
<② 인근 판매점 확인>	<③ 도보 거리 확인>
	

※ 판매점 이전 예정 장소의 정확한 상권 분석과 판매점 이전 설치 가능 여부는 반드시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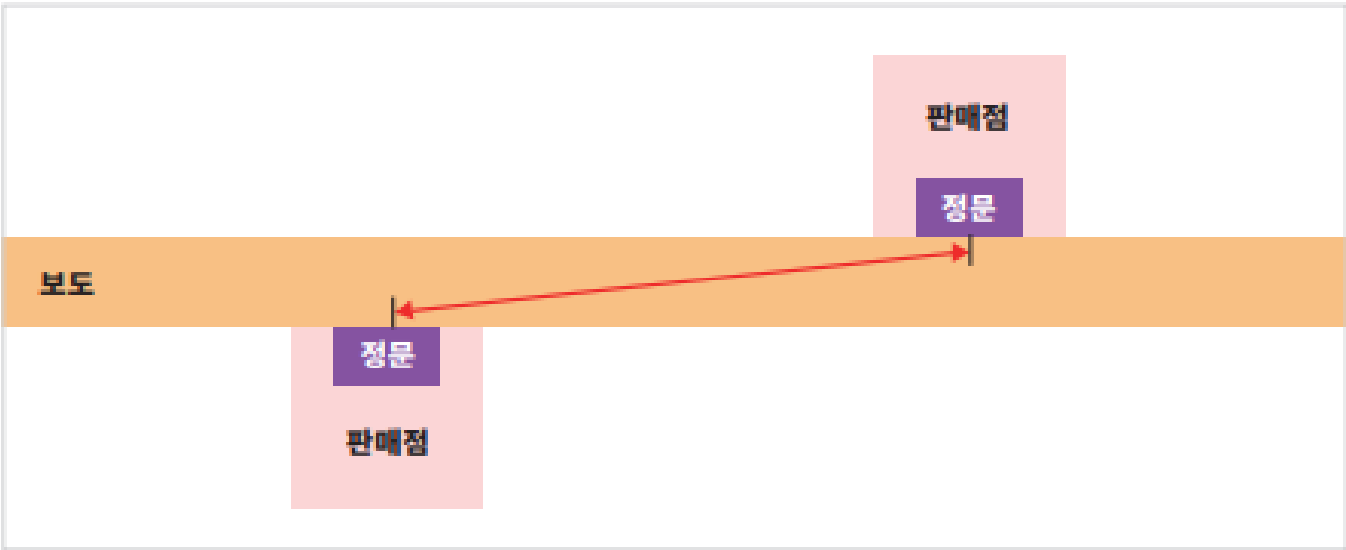
[참고] 거리측정방법 예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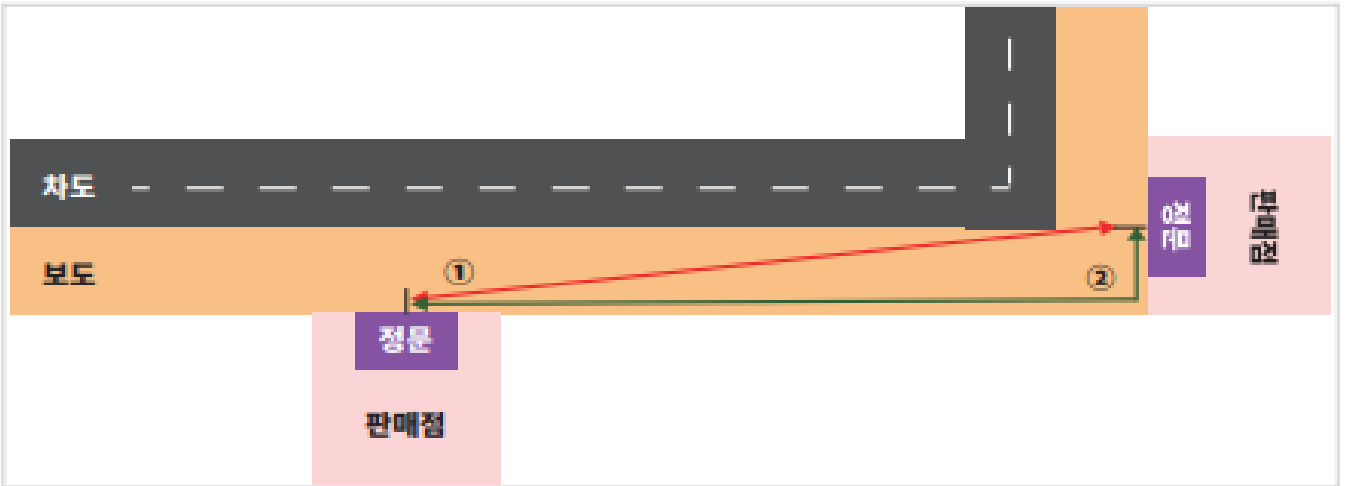
▷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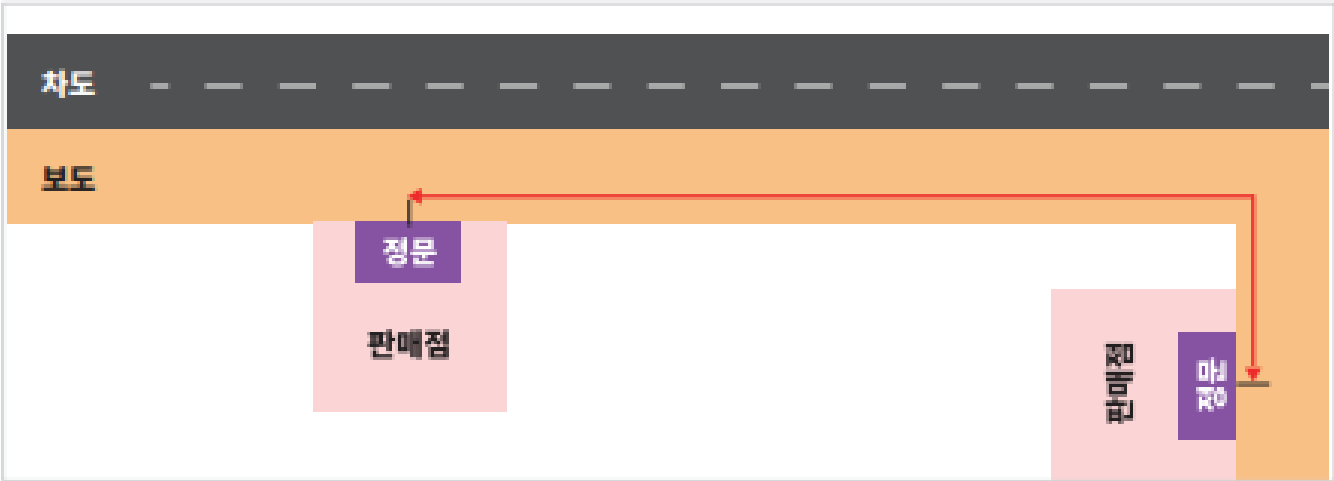
▷ 보도의 반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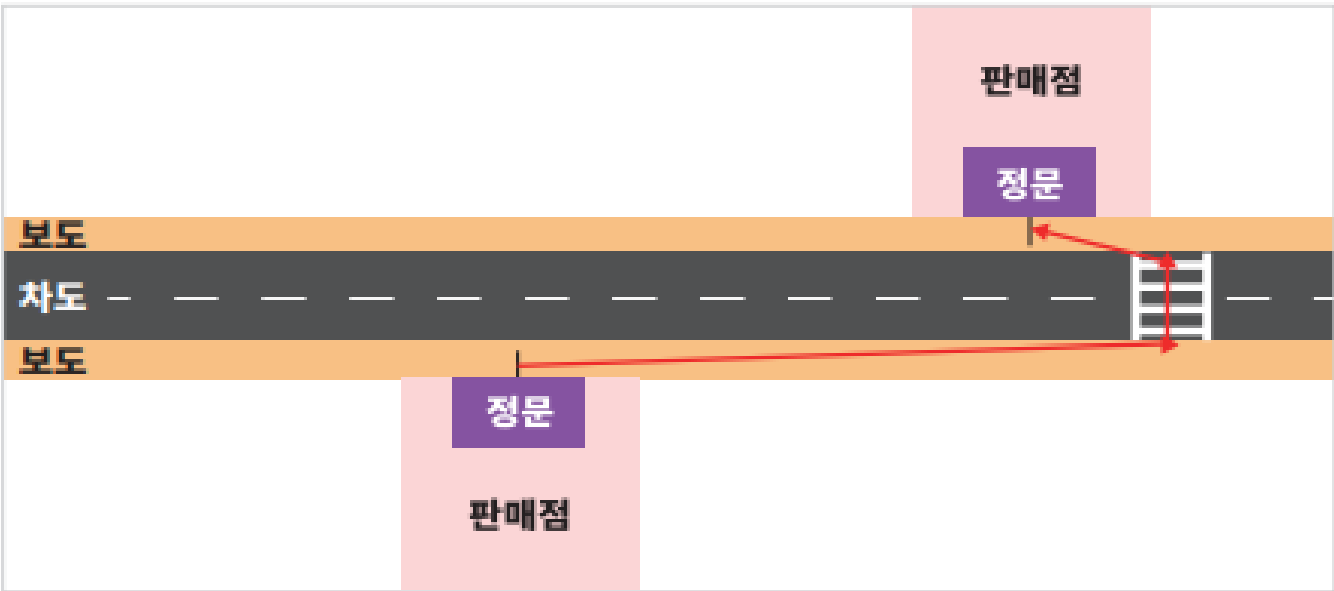
▷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 최단거리 기준으로 측정(붉은색)



▷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1층)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판매점 정문 기준,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	→ (지하 또는 2층 이상 건물) 건물의 1층 주 출입구(정문)를 기준으로 측정
This diagram shows two storefronts on the same sidewalk. The left storefront is on a pink building. The right storefront is located inside a green building, with a label '주출입구' (Main Entrance) above it. A red line with arrows connects the two storefronts, showing a path that goes from the left storefront, across the sidewalk, and then into the building to reach the right storefront.	This diagram shows two storefronts on opposite sides of a road. The road has a dark grey '차도' (Road) and an orange '보도' (Sidewalk) on each side. On the left sidewalk, a pink building has a '정문' label. On the right sidewalk, another pink building has a '정문' label. A red line with arrows connects the two storefronts, crossing the road.

온라인복권 판매점 주요 계약 내용

복권상품 관련 주요 계약서 내용

“로또복권은 복권법* 제2조제1호 마목의 온라인복권을 말합니다.”

*복권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계약서 항목

- ▷ 제13조 (복권의 종류) 본 계약에서 정한 로또의 종류는 “로또 6/45”로 하며, 추후 새로운 종류의 복권 상품이 도입될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 제21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①계약자는 상표(브랜드), 상호, 의장 등과 같은 “회사” 또는 복권 위원회의 지식 재산권을 “회사” 또는 복권위원회의 사전 승인하에 로또와 관련된 광고,홍보물에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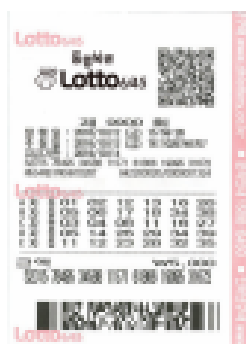
주요 설명

- ▷ 로또복권의 정식 상품명은 로또6/45입니다. 이외의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어입니다.
(예 : 동행복권, 동행복권6/45 등)
- ▷ 복권은 액면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만의 금액으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 로또복권에 대한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시안은 회사 승인 후 제작)

복권 판매 관련 권고 사항

- ▷ 판매인은 온라인(로또)복권 외 고객의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쇄복권과 연금복권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 ▷ 로또복권 고매출 판매점은 연금복권720+ 와 스피또 3종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권 상품 취급 시 복권 이용자들에게 “복권 전문 취급점”으로서의 전문성을 부각하여 판매 촉진 행위 및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품 로고 및 복권 상품



복권판매 관련 주요 계약서 내용

“복권판매는 복권법 및 지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릅니다.”

^{*} 지침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계약서 관련 항목

제6조 (판매 제한) ① “계약자”는 제14조에서 정한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자”는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 10만 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첨복권 및 당첨금 포함) 다만, 관련 법령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③ “계약자”는 그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 판매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계약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로또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로또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로또복권판매) ② 로또 1게임당 판매가격은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추후 가격 정책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주요 설명

▷ 판매제한 사항을 위반시 계약해지 뿐 아니라, 과태료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제한은 복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니저 뿐 아니라 복권 관계공무원(지자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조사관)의 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 (주)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은 판매점 외에 복권판매는 불가합니다.

▷ 복권은 구매자와 대면판매, 현금판매가 원칙입니다.

복권판매 관련 우수판매점 사례

▷ 동일 판매점에서 20만 원을 구매하려고 한 고객에게 ‘소액구매’를 권하여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복권을 구매하려 하자,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판매하지 않고 돌려 보냈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신용카드판매 불가’임을 설명하고 현금으로 복권을 판매하였습니다.

▷ 복권판매점 중 편의점 청소년 단거근로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복권은 면세상품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9호

▷ 복권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면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권판매인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과세 유지)

판매점 운영·관리 관련 주요 계약서 내용

“복권판매점 운영 시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서 : 이하 ‘계약서’라 합니다.

대금 정산

- ▷ 계약서 제8조(판매대금 정산의무)를 참고하십시오.
- ▷ 회차마감일 이후 은행 2영업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미입금 시 판매정지)
지연입금 시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판매인 부담)
2영업일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정산대금 = 총판매금액 - 판매수수료(5.5%) - 취소금액 - 지급금액 - 선입금
* 정산보고서 참고

판매 한도

- ▷ 계약서 제9조(판매대금 보증 및 보증부 한도 관리)를 참고하십시오.
- ▷ 판매한도 설정은 SGI서울보증사의 보증보험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 보증금액 중 90%가 판매한도로 설정됩니다.
- ▷ 판매대금보증(판매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선입금을 통해 한도를 높여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 선입금은 정산금액으로 반영되어 정산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당첨금 지급

- ▷ 계약서 제16조(당첨금 지급)를 참고하십시오.
- ▷ 판매점은 5만원 이하 당첨복권 소지인에게 당첨금 또는 복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당첨복권을 청소년이 소지한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 5만원 초과 당첨복권은 농협은행이 지급정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 ▷ 당첨복권은 단말기를 통해 당첨확인을 해야 하며, 지급인증을 거친 후 당첨복권과 지급영수증을 당첨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복권판매단말기 당첨확인을 사용하십시오.

교육

- ▷ 계약서 제26조(교육의무)를 참고하십시오.
- ▷ 복권판매인은 회사가 시행하는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 ▷ 교육대상자는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합니다.
- ▷ 교육은 외부교육장, 영업센터 등을 통해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단말기 예방점검 등 판매점 방문교육 시 계약자는 판매점에 계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

- ▷ 계약서 제24조(사업변경통보)와 제31조(관리, 감독 등)를 참고하십시오.
- ▷ 복권판매점 또는 계약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매니저에게 최소 15일 이전에 알려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 판매인의 정보 등의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 항목입니다.
- ▷ 복권 관계공무원 및 (주)동행복권에 의해 지정된 직원이 복권판매점에 방문하여 복권판매점 관련 서류 요구 시 성실히 협조·제공·설명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사항 및 위반행위 벌칙 규정

복권판매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즉시 해지 사유

- ▷ 계약서 제27조(계약해지 등) 및 온라인복권 계약자 위반행위 벌칙규정 [즉시 계약 해지]항목을 참고하십시오.
- ▷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서의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해지됩니다.
- * 주요 계약해지 사유 : 계약자 사망, 장기미영업, 복권법 위반에 따른 해지(처분해지) 등

중도 해지 사유

- ▷ 계약서 제29조(중도 해지)를 참고하십시오.
- ▷ 개인의 사정으로 복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 * 주요 중도 해지 사유 : 판매점 운영불가, 건강악화, 판매점 단속에 따른 중도 해지 신청 사유 등

허위 사실 유포 기밀유지 위반

- ▷ 계약서 제27조(계약해지 등)제1항제8호를 참고하십시오.
- ▷ 신청자격 제한이나 자격이 없는 분이 신청하여 판매인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지됩니다.
- 신용문제, 겸업불가 공무원, 자격획득일자 등 공고 내용과 다른 경우
- ※ 또한 계약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추후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위반 사항(즉시 해지)

- ▷ 복권 관련 법령 위반
- ▷ 계약내용을 고의, 장기적으로 위반
- ▷ 제3자 판매허용 기준을 미준수

정상 참작 사항(판매 정지)

- ▷ 온라인복권 판매인 벌칙규정 적용

※참고

- ▷ 복권법 위반에 따른 지도단속은 지자체의 복권 관계공무원이 시행 (고발, 행정지도)
- ▷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판매점 점검 및 계도는 (주)동행복권이 시행 (해지, 판매정지)

판매점 위반 행위 주요 사례 및 규정 안내

1. 청소년에게 로또를 판매하거나 당첨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벌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RED등급 3항

◎ (예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복권 당첨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복권(로또,연금복권,스피도)을 판매하는 행위는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¹의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동법 제37조제1항²) 또한, 판매 뿐만 아니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위반 사유에 해당되므로,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¹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²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7조제1항)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기준

법 명	조항	청소년의 기준	성년 나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만 19세 미만	20세 (생일기준이 아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경과자)

▶ 청소년으로 예상되는 고객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확인 후 판매 및 당첨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5년 성년(20세) 기준 : 2006년생

※ (참고)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활용: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를 확인
• 주민등록증: 국번없이 1382번, 정부24(서비스-사실/진위확인 메뉴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금해제 서비스 이용)
• 운전면허증: 경찰청 교통민원24(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2. 1인당 1회 1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 벌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RED등급 4항

◎ (예시) 로또 5만 원 구매 후 연금복권(스피도 포함)을 10만 원 추가 구매하여 복권 총 구매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복권은 로또, 연금복권, 스피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1인이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복권을 각각 구매한다면 판매 한도(1인 1회 10만 원)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 초과 판매에 해당합니다.

◎ (예시) 로또 6만 원 구매 후 4등 당첨 티켓(5만 원)으로 추가 구매하여 복권 발매 금액이 총 11만 원인 경우

▶ 당첨 복권으로 지급 받은 복권은 복권 총 구매(판매) 한도에 포함되므로 10만 원 한도 초과에 해당합니다.
* 구매 하는 복권 6만 원 + 당첨 복권 지급 받은 복권 5만 원, 총 11만 원

3. 당첨금 정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벌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RED등급 9항

◎ (예시) 로또 1티켓 5게임이 모두 4등(5만 원, 총 25만 원)이 당첨된 경우

- ▶ 당첨 게임이 많아 당첨금액이 높을지라도 당첨금 지급 규정(계약서 제16조제1항^{*}) 및 고객 요청에 따라 4등 당첨 금액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거나, 1인 1회 10만 원 한도내에 복권^{*}으로 당첨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권 10만 원 + 현금 15만 원 지급)

※ (판매계약서 제16조제1항) “계약자”는 당첨복권 소지인이 당첨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1등은 농협은행본점, 2~3등은 농협 은행 지점이 당첨금 지급처임을 안내하며, 4~5등은 “계약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4. 대면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우편, 전화, SMS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벌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RED등급 7항

◎ (예시) 발매한 복권티켓을 사진촬영한 뒤, 구매자에게 SMS로 발송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 받는 경우

- ▶ 복권판매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거래 또한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시) 위와 비슷한 사례로 SMS 이미지로 확인가능한 바코드번호로 당첨 지급처리 후 당첨금을 계좌이체로 비대면 지급하는 경우

- ▶ 당첨금은 반드시 당첨티켓의 실물을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벌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YELLO등급 9항

5. “계약자”의 판매점 내 로또번호를 추천, 예측 및 분석하는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벌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RED등급 12항

◎ (예시) 판매점에서 로또 번호 조합기를 고객 서비스용으로 운영 및 사용할 경우

- ▶ 로또 단말기를 통한 자동 발매(자동 게임)와 소비자가 직접 마킹한 슬립지를 통한 발매(수동 게임)가 아닌 판매점 내 번호조합기등 로또 번호를 추천/예측/분석하는 기기를 운영(서비스 포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및 벌칙 규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후에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인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철수 요청하는 사행성장비 및 사행심 조장 홍보물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요청한 장비일체)을 유지하는 경우

* 법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RED등급 11항

◎ (예시) “여기 오신 분은 1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신입니다”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였을 경우



▷ 사행심을 조장하는 홍보물(현수막, 출력물등)을 부착 또는 게시할 경우 사행심을 유발하는 선전행위로 회사가 계약자에게 해당 홍보물을 철수 요청할 경우 즉시 철거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서 및 벌칙 규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요청한 장비들은 언제든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복권판매 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을 경우

* 법칙 규정: 15차 온라인복권 계약자(판매인) 위반행위 벌칙 규정 BLUE등급 4항

◎ (예시) 복권판매점 불친절 사례

- ① 고객이 500원짜리 동전으로 로또 복권 구매를 요청하였더니 “누가 요즘 동전으로 로또를 사냐”며 짜증을 냄
· 동전으로 구매하는 것도 정상적인 현금 구매 방식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짜증을 내거나 판매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② 다른 판매점에서 구입한 당첨 복권을 지급 요청하였더니 “이걸 왜 우리 판매점에 와서 바꾸냐”며 불평을 하고 고객에게 면박을 줌
· 당첨금 지급 업무는 계약자의 필수 업무입니다. 비록 다른 판매점의 복권일지라도 직접 찾아온 고객을 위해 친절히 당첨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③ 월요일 아침에 첫 고객이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 요청하였더니 “월요일 아침부터 복권도 안 사고 현금만 요청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거나 “현금이 없다”며 복권 구매를 강요함
· 판매점에서는 항상 당첨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액을 준비해두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합니다.